

[별표1]<개정 1985.2.1>

주파수허용 편차표(제3조 관련)

주 파 수 대 및 무 선 국 종 별		허용편차(Hz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백만분율)
1. 9KHz-526.5KHz	가. 고정국 (1) 9KHz초과 50KHz이하의 무선설비	100
	(2) 50KHz초과 526.5KHz이하의 무선설비	50
	나. 육상국 (1) 해안국 (가) 200W이하의 무선설비 (나) 200W초과의 무선설비 (2) 항공국	100(비고 제12호참조) 100 100
	다. 이동국 (1) 선박국 (가) 주설비 (나) 보조설비의 송신장치와 구명정, 구명대 및 구명부기의 송신장치 (다) 항공기국	200(비고 제12호 참조) 500(비고 제8호 참조) 100
	라. 무선측위국	100
	마. 표준주파수국	100
2. 526.5KHz, 1606.5KHz	방송국	10Hz
3. 1606.5KHz, 4000KHz	가. 고정국 및 육상국 (1) 200W이하의 무선설비 (2) 200W초과의 무선설비	100(비고 제11호, 제12호 및 제16호 참조) 50(비고 제11호 및 제12호 참조)
	나. 이동국 (1) 선박국 (2)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및 선박국의 보조설비의 송신장치와 구명정, 구명대 및 구명부기의 송신장치 (3) 항공기국 (4) 기타 이동국	40Hz(비고 제 17호 참조) 100 100(비고 제 11호 참조) 50(비고 제 18호 참조)
	다. 무선측위국 (1) 200W이하의 무선설비	20(비고 제 19호 참조)

	(2) 200W초과의 무선설비	10(비고 제 19호 참조)
	라. 방송국	10(비고 제 20호 참조)
	마. 표준주파수국	0.005
	바. 아마추어국	500
4. 4MHz-29.7MHz	가. 고정국	
	(1) 단측과대 및 독립측과대의 발사	
	(가) 500W이하의 무선설비	50Hz
	(나) 500W초과의 무선설비	20Hz
	(2) 종별 F1B의 발사	10Hz
	(3) 기타 종별의 발사	
	(가) 500W이하의 무선설비	20
	(나) 500W초과의 무선설비	10
	나. 육상국	
	(1) 해안국	20Hz(비고 제 12호 및 제21호 참조)
	(2) 항공국	
	(가) 500W이하의 무선설비	100(비고 제 11호 참조)
(나) 500W초과의 무선설비	50(비고 제 11호 참조)	
(3) 기지국	20(비고 제 11호 참조)	
(4) 기타 무선국		
(가) 500w이하의 무선설비	100(비고 제 11호 참조)	
(나) 500w초과의 무선설비	50(비고 제 1호 참조)	
다. 이동국		
(1) 선박국		
(가) 구명정, 구명대 및 구명부기의 송신설비	50	
(나) 종별 A1A의 발사	1	
(다) 종별 A1A 이외의 발사	50Hz(비고 제12호 및 제 24호 참조)	
(2) 항공기국	100(비고 제 11호 참조)	
(3) 기타의 이동국	40(비고 제 11호 및 제25호 참조)	
라. 방송국		
마. 표준주파수국	0.005	
바. 아마추어국	500	
사. 간이무선국	50	

	아. 라디오부이국	50
	자. 우주국	20
	차. 지구국	20
5. 29.7MHz~ 100MHz	가. 고정국 (1) 50W이하의 무선설비	30
	(2) 50W초과의 무선설비	20
	나. 육상국	20
	다. 이동국	20(비고 제 29호 참 조)
	라. 무선측위국	50
	마. 방송국 (1)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	1,000Hz(비고제28조참 조)
	(2) 기타방송국	2,000Hz(비고제27호참 조)
	바. 표준주파수국	0.005
	사. 아마추어국	500
	아. 간이무선국	50
	자. 우주국	20
차. 지구국	20	
6. 100MHz~ 470MHz	가. 고정국 (1) 50W이하의 무선설비	20(비고 제29호 참조)
	(2) 50W초과의 무선설비	10
	나. 육상국 (1) 항공국	20(비고 제30호 참조)
	(2) 해안국	
	(3) 기지국 (가) 100MHz~235MHz의 무선설 비	15(비고 제31호 참조)
	(나) 235MHz~401MHz의 무선설 비	7(비고 제31호 참조)
	(다) 401MHz~470MHz의 무선설 비	5(비고 제31호 참조)
	다. 이동국 (1) 항공기국	30(비고 제30호 참조)
	(2) 선박국 (가) 156MHz~174MHz의 무선설 비	10
	(나) 156MHz~174MHz이외의 무 선설비	50(비고 제14호 참조)
	(3) 육상이동국 (가) 100MHz~235MHz의 무선설 비	15(비고 제31호 참조)
(나) 235MHz~401MHz의 무선설	7(비고 제31호 및 제	

	비 (다) 401MHz~470MHz의 무선설비	32호 참조) 5(비고 제41호 및 제32호 참조)
	라. 무선측위국 (1) VOR의 송신설비 (2) 기타의 무선측위국	20 50(비고 제5호 참조)
	마. 방송국 (1) 텔레비전을 행하는 방송국 (2) 기타방송국	1,000Hz(비고 제28호 참조) 2,000Hz(비고 제27호 참조)
	바. 표준주파수국	0.005
	사. 간이무선국	20
	아. 아마추어국 (1) 1W이하의 무선설비 (2) 1W초과의 무선설비	100 500
	자. 우주국	20
	차. 지구국	20
7. 470MHz-10.5GHz	가. 고정국 (1) 470MHz~2450MHz의 무선설비 (가) 100W이하의 것 (나) 100W초과의 것 (2) 2450MHz~10.5GHz의 무선설비 (가) 100W이하의 것 (나) 100W초과의 것	100 50 200 50
	나. 육상국 및 이동국 (1) 470MHz~2500MHz이하의 무선설비 (2) 2450MHz~10.5GHz의 무선설비	20(비고 제33호 참조) 100(비고 제33호 참조)
	다. 무선측위국 (1) 지상 DME 및 지상 데칸의 송신설비 (2) 지상 DME 및 지상 데칸의 송신설비 (3) SSR의 송신설비 (4) ATC 트랜스폰다의 송신설비 (5) 기타 무선측위국 (가) 470MHz~2450MHz의 무선설비 (나) 2450MHz~10.5GHz이하의 무선설비	20 100KHz 200KHz 50(비고 제5호 참조) 1250(비고 제5호 참조)
	라. 아마추어국	
	마. 방송국 (1) 텔레비전을 행하는 방송국	1000Hz(비고 제28호

	(2) 기타 방송국	참조) 100
	바. 우주국 (1) 470MHz~2450MHz의 무선설비 (2) 2450MHz~10.5GHz의 무선설비	20 20
	사. 지구국 (1) 470MHz~2450MHz의 무선설비 (2) 2450MHz~10.5GHz의 무선설비	20 50
8. 10.5GHz-40GHz	가. 고정국	300
	나. 무선측위국	5000(비고 제5호 참조)
	다. 방송국	100
	라. 우주국	100
	마. 지구국	100

비 고

1. 표중 Hz는 전파의 주파수단위를 1초간의 사이클을, W 및 KW는 공중선 전력의 크기와 단위를 표시한다.
2. 표중 공중선 전력은 단측파대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첨두포락선전력(PX)으로, 기타의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평균전력(PY)으로 한다.
3. 동일한 송신장치 및 동일주파수를 2이상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편차가 적은 것에 의한다.
4. 비상국·실험국·기상원조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및 특별업무국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중에 당해주파수대의 고정국(이동하는 무선국에서는 이동국을 말한다)의 값에 의한다. 다만, 특수송신장치가 있는 실험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한다.
5. 400MHz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측위국의 무선설비(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지정 주파수대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의 지정 주파수대는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6. 라디오존데 400MHz대에서 지정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상용 라디오로봇트, 전파 고도계 기타 이와 유사한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4,000(10의 -6승)으로 한다.
7. 243MHz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구명부기의 송신설비에 있어서는 그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한다.
8. 보조설비의 송신설비가 주설비 송신설비에 대신하여 예비송신설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박국의 주설비의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9. 72MHz초과 470MHz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다중 통신로의 송신설비에 대하여는 그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를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50(10의 -6승)으로 한다.
10. 470MHz초과 10GHz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고정국, 육상국 및 이동국의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분할 다중방식으로서 100W이하의 무선설비 : 500(10의 -6승)

나. 시분할 다중방식 이외의 방식으로서 100W를 초과하는 점유 주파수대폭의 허용치 3MHz이하의 무선설비 : 100(10의 -6승)

다. 825MHz초과 890MHz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1) 기지국 : 1.5(10의 -6승)

(2) 이동국 : 2.5(10의 -6승)

11. 단일 통신로의 단측파대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2.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안국용 : 15Hz

나. 선박국용 : 40Hz

13.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무선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10(10의 -6승)으로 한다.

14. 선상통신설비(450MHz초과 470MHz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5(10의 -6승)으로 한다.

15. 동시에 2개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ILS의 로칼타이저의 송신설비에 있어서는 그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20(10의 -6승)으로 한다.

16. 주파수편이전건조작에 의한 무선전신의 송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10Hz로 한다.

17.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50(10의 -6승)으로 한다.

18. 단측파대 무선전화의 송신설비 또는 주파수편이 전건조작에 의한 무선전신의 송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40Hz로 한다.

19. 1606.5KHz초과 1800KHz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표지의 송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50(10의 -6승)으로 한다.

20. 반송파 전력이 10KW이하이고 A3E용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606.5KHz초과 4000KHz이하의 무선설비 : 20(10의 -6승)

나. 4MHz초과 29.7MHz이하의 무선설비 : 15(10의 -6승)

21.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10(10의 -6승)으로 한다.

22. A1A의 모르스전신의 통신주파수대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200(10의 -6승)으로 한다.

23. A1A의 모르스전신의 호출주파수대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4MHz초과 23MHz이하의 무선설비 : 40(10의 -6승)

나. 25MHz대의 무선설비 : 30(10의 -6승)

24. 26,175KHz초과 27,500KHz이하의 주파수대로서 연안 또는 근해에서 운용하며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선박국의 송신설비의 반송파전력이 5W이하이고 A3E전파를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40(10의 -6승)으로 한다.
25. 26,175KHz초과 27,500KHz이하의 주파수대에서 운용하는 침두포락선 전력이 15W이하인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40(10의 -6승)으로 한다.
26. 이동체에 설치하지 아니한 휴대용 장치에 있어서 평균전력 5W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40(10의 -6승)으로 한다.
27. 108MHz이하의 주파수로 운용하는 평균전력 50W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3000Hz로 한다.
28. 영상침두포락선 전력이 1W이하인 국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00MHz초과 470MHz이하의 무선설비 : 5KHz
 - 나. 470MHz초과 960MHz이하의 무선설비 : 10KHz
29. 직접주파수 변환을 사용하는 다단무선중계방식의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30(10의 -6승)으로 한다.
30. 채널간격이 50KHz인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50(10의 -6승)으로 한다.
31. 채널간격이 20KHz이상의 경우에 적용한다.
32. 이동체에 설치하지 아니한 휴대용 장치에 있어서 평균전력 5W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불구하고 15(10의 -6승)으로 한다.
33. 체신부장관은 혼선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파수 허용편차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